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81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정태호 · 이연희 · 김주영
이학영 · 김태년 · 이광재
윤후덕 · 이주희 · 안도걸
정준호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 및 물가 상승 현상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이 소액의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가구의 실제 담세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100만원”을 “400만원”으로, “500만원”을 “9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400만원”으로, “500만원”을 “9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0조(기본공제)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u>100만원</u>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u>500만원</u>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 ----- ----- ----- <u>400만원</u> ----- ----- <u>900만원</u> ----- ----- -----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3. ----- ----- ----- ----- ----- ----- -----

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u>100만원</u>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u>500만</u> <u>원</u>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 마. (생략) ②·③ (생략)	----- ----- <u>400만원</u> ----- <u>900만</u> <u>원</u> ----- ----- 가. ~ 마.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